

李退溪의 禮學**

周 何*

● 目 次 ●

I. 序 論	(二) 古事に 考據한 것
II. 論述의 성질	(三) 家禮에 많이 의거하다.
(一) 禮文을 詮釋한 것	(四) 널리 禮를 잘 아는 자에게 묻다.
(二) 禮意를 闡述한 것	(五) 세속의 便宜함을 따르다
(三) 禮書를 토론한 것	(六) 義와 理에 적합하게 하다
(四) 古制를 살펴 推定한 것	IV. 禮事를 논한 태도
(五) 變禮의 근원을 推定한 것	(一) 謹慎했다
(六) 禮制를 의논하여 세운 것	(二) 熟辨했다
(七) 禮事를 論斷한 곳	(三) 闕疑했다
III. 論斷의 準據	(四) 改正했다
(一) 古禮에 考據한 것	V. 結 論

I. 序 論

이퇴계가 禮事에 대해서 논급한 것이 여러 군데 散見되는데 이제 그것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 一. 書鈔 중에 143조.
- 二. 自省錄 중에 14조.
- 三. 言行錄 중에 79조, (「論禮」항에 63조, 「부록」項에 14조, 「考終記」項에 2조.)

* 대만사범대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9호(1978) 게재논문

모두 합쳐서 236조를 찾아낼 수 있다. 여기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나서도 아직 224조나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바의 「條」란 것은 곧 禮事를 논한 것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대체로 一文에서 여러 가지 禮事를 논급한 것이 있어 출처는 비록 같은 글에 기재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禮類도 그 다른대로 나누어서 條를 계산했다. 또 같은 禮事이면서 두 곳에 보이는 것이라도 앞뒤의 논한 바가 서로 다르거나 혹은 兩說의 중점이 서로 다른 것은 의당 나누어 수록했다. 또 他書에 徵引되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俞彦鏞五服名義 등에서 인용한 바가 모두 위에서 말한 諸書 중에서 따온 것은 제외하고 수록하지 않았다.

언행록 권5의 「論禮」항 중에 小註로 禮類를 설명한 것, 즉 「此以下冠禮」·「此以下昏禮」 등이 있으나, 역시 관·혼·상·제 四類에 불과할 뿐이며 이는 後學들이 정리할 때에 題한 것이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일찍이 禮類에 귀속시키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의 禮論의 면밀하고 廣泛함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기록된 각 조의 내용을 취하여 禮類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오직 그 가운데서 喪·祭 二禮는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대단히 풍부해서 이치로 보아서는 응당 다시 세목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지만, 紙面의 제한도 있고 해서 그 정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자성록 및 언행록에 보이는 각 조에는 모두 연대를 기재하지 않았고, 연보 가운데는 오직 그의 行禮事略을 기록했지 論禮의 의견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오직 書鈔에 연대를 附記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그 論禮의 시기를 대략 살펴볼 수가 있다. 이를테면 己酉年 퇴계가 49세 때, 金惇敍에게 보낸 답서에서 상제·기제에는 당연히 肉類를 써야 한다고 한 것 등의 일을 논했고(전집<日本版·下同> p.156), 同年 完姪問答에서 家法을 삼가 지키는 일을 論示하였으며(전집 p.222), 또 癸丑年, 퇴계가 53세였을 때 權景受에게 답한 글에서 龍官의 葬事에 대해서 논하

였고(전집 p.56); 같은 해 琴聞遠과의 문답에서 嚴威嚴恪은 아버이를 섬기는 까닭에서가 아니라는 일을 논하였다(전집 p.196). 이상의 네가지 일을 논한 것은 조금 이르고, 그 나머지의 것은 모두 庚申年에서 庚午年 사이로 곧 퇴계의 나이 60세에서 70세 사이의 것이다. 그런 까닭에 퇴계선생行實에 이르기를 「만년에는 다시 禮學에 유의해서 遺傳할 것을 토론하고, 時宜를 참작해서 학자들에게 가르쳤으며 저술하여 책으로 이루어 놓지는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만년에 가서 閱歷한 것이 豊博했고 몸소 체험함으로써 예학을 닦았기 때문에 이치럼 沈潛篤厚할 수가 있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共計
禮類	冠	童	昏	喪	承	諱	祭	廟	禱	受	拜	祠	鄉	敬	饋	日	論	
	禮	子	禮	禮	重	稱	禮	制		胙	賢	黨	長	獻	常	禮	家	書
						謂												
						行												
						第												
書鈔	1	2	876	5	31	2				1	4	1	1		1	2		144
自省錄			9		1	2		1										13
言行錄	論禮	2	2	28	1		14	3					1					51
	附錄	1				2	4	2		1				3	1			14
	考終記					2												2
共計	2	2	4	126	7	8	51	7	1	1	1	5	1	4	1	1	2	224

논한 바의 禮事 중에서 國恤이나 혹은 廟制 등 국가大禮에 관한 것으

로는 乙丑년 文定왕후가 薨했을 때, 李仲久와의 문답에서 致仕者는 小君之服임을 논했고(전집 p.39); 그해 安東府官에게 보낸 답서에서 國恤의 臣服에 대해서 논급했으며(전집 p.71); 丁卯년 명종이 승하하자 河城君이 들어와 大統을 잇고, 本親 河東郡부인의 상을 당했을 때, 李仲久에게 준 답서 중에서 繼禮之服에 대해서 논급했고(전집 p.39), 己巳년 2월 文宗實錄에 의거, 文昭殿의 儀軌를 고찰하여 친히 政院으로 나아갔는데 上廟圖 및 筭子는 奇明彦問答 중에서 하나는 原廟 昭穆의 座向이 마땅히 어떠하여야만 하는가를 논했고 또 하나는 인종이 文昭殿에 耐祭를 올리지 않음으로써 오는 득실을 논했다(전집 p.91·92).

이상에서 진술한 다섯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나면 그 나머지는 모두 민간의 禮事에 속하는 것으로 朝廷謨猷에 관한 것은 거의 없는데 이는 대개 이미 不居其位하였으므로 정치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民間禮事에 대해서 말하자면 古禮에서 구했거나 혹은 朱熹家禮에 실린 것도 있어서 마땅히 禮書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따져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민속이 변해서 禮書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써 이미 常行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득실시비가 있었을 것이므로 학자들이 의혹이 생겨 물어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 후세에 와서는 人事가 점점 번잡해져서 지난 날의 禮文에는 不備한 것도 있어, 그것이 금세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이와같은 의문과 어려움이 불어날 때마다 간혹 퇴계에게 질문했다. 퇴계는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그가 감히 경솔하게 결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存疑慎殆하여 대답을 하지 않은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논단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개 그의 論禮의 取舍準據와 정신태도를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

II. 論述의 性質

얻은 바의 200여條 禮類의 구분은 이미 전표에서 보았고, 그 논술한

내용의 성질을 가지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7항이 있다.

(一) 禮文을 詮釋한 것

△ 書鈔 권6, 李剛而의 물음에 답한 곳에(전집 p.118) 禮記喪大記의 「結絞不紐」를 풀이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생각컨대 禮記에서 다만 不紐라고만 말하고 紐를 제거하는 文은 없는데 세속에서 잘못을 이어받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또 紐는 세속에서 衣襟之系라고 말하니 이 역시 잘못이다. 其文에 結絞不紐라고 했는데 絞의 음은 좃이고, 斂할 때의 布를 絞라고 한다. 紐는 비록 「맺는 것」이라고訓하지만 이 紐字는 다만 「맺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尸體를 斂하는 布의 양쪽 끝을 견고하게 완전히 묶어서 귀모양으로 맺어서 쉽게 풀리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自省錄의 金伯榮 등에 답하는 편지에서(전집 p.325) 禮記喪服小記의 「總小功, 虞卒哭則色」을 풀이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자를 씌워서 머리를 整飾하는 일은 주인에서 總小功에 이르기까지 모두 色한다. 色한다는 것은 冠을 버리고 布木으로써 상투를 두르는 것이다. 이것을 冠에 比한다면 色하는 것은 곧 서러워서 整飾하는 것이다.」

(二) 禮意를 闡述한 것

△ 書鈔 권7 鄭子中の 물음에 답한 곳에(전집 p.139) 飯舍 등 예절을 논하고 모두 喪人이 스스로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즉 「古人이 이런 법을 마련한 것은 차마 하지 못하는 바가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했던 까닭은 아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痛迫한 情理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있는 일을 당하여 그것을 스스로 하지 않고 남에게 시키는 것은 사람으로써 더욱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예법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小不忍은 차마 하지 못하면서도 도리어 大不忍은 차마 해내니 이것이야말로 크게 불가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 書鈔 권8 金而精의 물음에 답한 곳(전집 p.163) 祭饌은 왼쪽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설을 논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체로 음식은 밥을 주로하기 때문에 밥을 놓는 곳이 곧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이를테면 평시에 음식을 陳設할 때는 왼쪽에 밥, 오른쪽에 국을 놓는데, 이는 왼쪽을 귀히 여기는 것이지만 제사에는 오른쪽에 밥, 왼쪽에 국을 놓는데 이는 오른쪽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른바 神道尙右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三) 禮書를 토론한 것

△ 書鈔 권3 金敬夫肅夫에게 답한 곳(전집 p.74) 儀禮의 禫日變服之事를 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찍이 禮經을 보았더니 禫祀로부터 吉禮에 이르는 사이 服變之節이 거의 5~6회나 있습니다. 周禮의 文繁이 곧 이와 같았으므로 후세에서는 진실로 일일이 이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家禮에서는 다만 이와 같았을 뿐입니다.」

△ 書鈔 권7 鄭子中の 물음에 답한 곳(전집 p.143)에 周禮를 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周禮는 일찍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선현들이 周公이 天理의 爛熟함을 운용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滉이 일찍이 그 사이에서 의문을 늘 가졌던 것은 그것이 너무도 繁密해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四) 古制를 살펴 추정한 것

△ 書鈔 권8 金而精의 물음에 답한 곳(전집 p.169)에 부친이 생존해 있으면 모친을 위해서는 期服을 입은 뒤 상복을 벗는데, 벗은 뒤의 복장은 어떤가에 대해서 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心喪3년은 아마도 後王의 체제로서 가례에 著錄되어 세상에 그 가르침이 내려온 것일 따름입니다. 의례에 부친상은 반드시 三年을 입은 뒤에서야 娶한다고 한 것은 아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唐 賈公彥의 疏에 心喪三年의 說이 있는 것을 보면 周時에 이미 그 禮事가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러나 禮經에 그에 대한 문구가 없는 까닭에 그것이 後王의 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 書鈔 권9 禹景善의 물음에 답한 곳(전집 p.176)에 喪斂握手의 禮制를 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례의 用尺은 틀림없이 周尺일 것인즉 尺二寸의 帛은 겨우 지금의 尺四寸二分 남짓하니 다만 이 정도의 一幅만으로 兩手를 싼다는 것은 두 손의 손바닥을 싸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손등까지 싼 수 있겠으며 손을 싼다고 명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의례에 『設決麗于■』이라 했고 疏에는 손은 長尺二寸으로 묶되 두 끝을 손등으로 둘러서 반드시 이중으로 싼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짧은 帛一幅을 사용해서 그렇게 싼다면 손등까지 나오지도 않을 터인데 어떻게 손등까지 이중으로 하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두 幅을 사용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五) 變禮의 근원을 추정한 것

△ 書鈔 권4 奇明彦의 물음에 답한 곳(전집 p.83)에 祧遷에 礙難이 있음을 논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 大要是 모두 妻尙在·母尙在·祖母尙在의 설로 말미암아 이같은 허다한 透礙를 자아내게 된 것입니다.」

△ 書鈔 권10 趙起伯에게 답한 곳(전집 p.209)에 4대를 제사하는 禮制를 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대를 제사하는 것은 원래 제후의 체제입니다. ……後來 程子が 高祖는 有服之親이면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고, 주자가례에는 정자의 설에 따라 4대를 제사하는 예를 세웠습니다. 대개 옛날에는 그 廟가 각각 다르고 그 체제가 매우 컸기 때문에 代數의 차등은 엄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후세에는 다만 一廟만 두어 龕을 나누어 제사하였고, 禮制도 특히 간술하여 오히려 代數에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처럼 古禮가 변한 것입니다.」

(六) 禮制를 의논하여 세운 것

△ 書鈔 권4 奇明彦의 물음에 답한 곳(전집 p.85)에 家婦를 위하여 법을 세우는 일을 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傳重의 일은 叔姪至視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總小功과 심지어는 無服之親에까지 있을 것이니 이러한데 이와 같은 법을 쓴다면 형세가 반드시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구제코자 한다면 아무쪼록 다시 一法을 세워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르지 않는 죄를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그들을 糾督하면 그것은 또한 거의 좋을 것입니다.」

△ 書鈔 권4 奇明彦의 물음에 답한 곳(전집 p.91)에 인종·명종은 함께 昭穆한 이상, 一室에서 함께 祔祀를 지낼 수 없음을 논하고 마땅히 後寢에다 一室을 增立해서 位向은 같되 室은 달리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七) 禮事を 論斷한 곳

△ 書鈔 권8 金而精의 물음에 답한 곳(전집 p.163)에 童子不總者를 논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에는 자식이 있으되 어리면 어른이 衰服을 입혀서 안고 손님에게 절을 하는 禮를 갖추었는데 하물며 10세가 지난 童子라면 당연히 服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인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므로 總服은 입지 않을 따름입니다.」

△ 書鈔 권8 金而精의 물음에 답한 곳(전집 p.161)에서 사람이 少時에 아버지를 여의고 及長에 追服을 입는다는 것은 기왕에 그 때를 잃어버렸고 또 吉祀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一朝에 哭擗을 하며 行喪을 한다는 것은 심히 情에 가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節文에 있어서도 쓰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논하였다.

이상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해 보건대 그 내용성질은 비록 7개 조항으로 나눌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禮意를 闡述하고 禮事を 論斷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귀착된다. 대개 행사의 可否나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하는 문제는 실로 논단에 기대하고 이 논단을 만든 원인은 또

반드시 禮意에 대한 설명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疑難이 모두 풀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즐거이 따르게 되었다. 무릇 疑難문제는 대부분 여기에 있기 때문에 퇴계의 論禮는 역시 이 二類에 관한 것이 많다. 其文이 禮事의 논단 및 禮意의 闡述에 속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行文을 뽑아내어 정리해 보면 그의 論禮의 준거 및 정신태도가 모두 그 가운데 있다.

III. 論斷의 準據

해결을 기다리는 질의에 당하였으되 그 禮事가 극히 瑣細하여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논거나 혹은 禮意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 禮事가 중대한 것은 겸양해서 결단을 하지 않고 신중히 다루어 의문을 남겨 놓았는데 이런 것도 원래 소위 논거나 혹은 禮意의 설명이 없다. 그러나 이런 二類는 그 수가 많지 않아서 모두 약 18조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 200여조는 모두 논단이 있고 그 논단의 是非取舍는 모두 근거한 바가 있다.

(一) 古禮에 考據한 것

古禮가 湮滅되고 보이는 것은 儀禮에 17편, 그리고 2戴의 예기에 僅存할 뿐이지만 그러나 禮의 본원은 곧 여기에 있다. 후세의 沿革은 대저 이 본원을 토대로 해서 그 사이에서 損益했다. 세대가 바뀌어짐에 이르러 시대는 變易을 좋아해서 비록 人事에 있어서 필요한 것일지라도 옛날과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어 禮俗의 損益이 많아졌다. 그렇지만 人情事理는 대체로 크게 다를 것이 없어서 그 근본대로 변화를 추진해 나가고 그 흐름에 따라서 時宜에 求合하는 것이므로 그 논단한 바는 오히려 情理 중에 있었다. 퇴계의 논술을 살피건대 매년 다방면에서 徵引하고 있으며 또한 대체로 모두 治禮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要籍인데 이는 古禮本源으로서 평소에 깊이 연구했었기 때문에 精熟하게

운용하여 宜當하게 처치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 그가 徵引한 바의 禮籍의 절목을 抄錄하여 이를 빌어 源流兼備의 실재를 보기로 한다. 오직 간혹 引文에서 書篇을 명확히 들어놓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소속을 조사하여 아울러 抄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儀禮：士喪禮·既夕禮·士虞禮·喪服.
- △ 周禮：弁師·黨正.
- △ 禮記：曲禮·檀弓·王制·曾子問·內則·喪服小記·大傳·雜記·喪大記·祭義·鄉飲酒義.
- △ 杜佑·通典.
- △ 程頤·二程遺書.
- △ 楊復·儀禮圖.
- △ 朱熹·儀禮經傳通解·家禮·言行錄·朱子大全.
- △ 馬端臨·文獻通考.
- △ 大明會典.
- △ 五禮儀
- △ 丘瓊山·家禮.
- △ 高氏·喪禮.

그런 까닭에 그가 禮事를 논한 것에는 혹은 古禮에 의거하기도 하고 혹은 근세의 禮書에 따르기도 했는데 무릇 考據할 수 있는 禮文은 반드시 그 禮文에 考據하여 처리했다. 이를테면 언행록 권2의 「處鄉」項 아래에(전집 p.27) 事長之禮에 대해서 논급하여 「나이가 배로 많으면 아버지처럼 섬기고, 10년이 더 많으면 형님처럼 섬기며, 5년이 더 많으면 함께 걸어 갈 때 조금 뒤에 따라간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禮記曲禮上篇에 있는 문장으로 비록 書篇을 明舉하지는 않았으나 그 말이 반드시 근거한 곳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書鈔 권3·金亨彦의 물음에 답한 곳(전집 p.61)에 祔祭를 祥後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은 文公家禮·丘氏家禮 및 五禮儀 사대부祔禮에 의거하여 이를 참작해서 말한 것임을 분명히 들어놓았다. 이 밖에도 「이제 禮事를 행함에 있

어서 合義를 바란다면 임의로 행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古禮에 考據해서 처리해야 한다.」(書鈔 권2 李仲久問答 전집 p.39)라고 한 것이나 혹은 또 「만약에 先王의 制禮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이는 효라고 하기에 부족하며 이치를 아는 군자에게 바로 비방을 당할 것이니 어찌 매우 可惜한 일이 아니겠는가?」(書鈔 권3 與李景昭 전집 p.75)라고 한 것은 모두 그가 禮를 논할 때마다 禮文에 의거하여 결단을 내린 것임을 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古禮는 시대가 悠遠해서 今世에 행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들 어맞지 않는 데가 있다. 혹시 今世에 通行하는 것이 습관으로 쌓이고 풍속으로 이루어지고 또 의리에 해가 없는 것이라면 또한 今世의 습속에 어그러지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매양 「古禮를 준수하는 것은 좋다…… 만약에 다른 일은 禮를 다 갖추어 행하지 못하고 다만 이 一節만을 행한다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풍속과 어그러지는 것이다.」(書鈔 권8 金而精問答 전집 p.161)라고 했고 또 金而精이 일찍이 深衣와 幅巾을 만들어 보내주었는데 深衣는 그래도 合古宜今한 것이라 칭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착용했으나 幅巾에 대해서는 「다만 풍속에 크게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몸에도 특히 불편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書鈔 권9 禹景善問答 전집 p.179). 이로써 그는 古禮를 준수하여 溯原했으되, 古禮를 막아 풍속을 교정한 것은 아니며, 禮事를 논함에 있어서 정확히 의거했음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二) 古事に 考據한 것

古禮를 徵引할 때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의거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禮文이 不備되었으되 옛 賢者의 行止에 있어 그 일이 대개 금일의 것과 가깝거나, 같은 것이 있으면 역시 인용하여 참고하고 이를 빌어서 그 禮事의 마땅하고 마땅하지 못한 것을 논단한다. 그래서 언제나 퇴계는 故事를 徵引하고 있음을 본다. 이를테면 서원에서 鄉賢을 祠하

는 일을 논하되, 永嘉書院·浯溪書院·泰亨書院 등의 舊制를 인용하여 옛 서원의 祠享이 일치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書鈔 권2 答李子發·전집 p.45). 그가 葬禮의 有棺無槨을 논하되, 공자가 鯉를 장사지낸 일 및 顏淵이 죽었을 때 鯉를 葬할 때처럼 옳게 해주지 못했던 일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으며(書鈔 권3 答權景受 전집 p.56), 또 曾參·閔子騫의 소행을 인용하여 祥禫 후에 廬室을 헐지 않고 朝夕上食을 墓前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過禮임을 논하였는데(書鈔 권3 與李景昭, 전집 p.75) 이는 모두 옛날에 행하던 바에 의거하여 今事의 시비를 논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博聞廣知하고 理精事熟하여야만 비로소 다방면의 것을 徵引할 수 있고 理와 事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퇴계의 行文을 살펴보면 徵引한 바의 역대고사는 한결같이 隨手拈來하였고 貼切合宜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대체로 그의 배운 바는 다만 性理道學 일뿐만 아니라 經史雜記의 書도 역시 많이 유의하고 있음은 알 수가 있다. 그런 까닭에 그의 李仲久問答에 「儀禮經傳에도 오히려 미비한 바가 있으므로 偏信해서 禮事를 결단해서는 안되며, 世間雜書라도 또한 읽어 보고 서로 參驗해서 버리고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전집 p.40)라고 말했는데 이는 역시 열심히 연구해서 물음에 待하고 널리 배워서 이해해 둔다는 뜻일 것이다.

(三) 家禮에 많이 의거하다.

퇴계의 性理道學은 근원이 程朱에서 비롯되었으며, 文公에 대해서는 더욱 항상 마음에 정성껏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무릇 儀禮經傳通解·家禮·言行錄·書鈔 등 書에 숙달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論事議禮面에 있어서는 家禮를 引據한 것이 많다. 대개 禮를 논한 것은 비록 그 근본을 고대에서 찾고, 그 근원으로 소급해 보고 그 흐름을 뻗어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古制라고 해서 기실 반드시 모두가 금일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릇 文公이 이미 儀禮經傳通解를 편찬했고

또 家禮를 지은 일도 있으니 곧 옛날과 今日이 서로 다름으로 해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沿革을 損益한 뜻이 있다. 무릇 改易한 바를 古禮에 비교하면 더욱 時需에 적합하게 되었는데 이리하여 후세의 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게끔 되었다. 그러므로 퇴계가 禮를 논한 것에는 時宜에 적합함을 구하였고 家禮를 인용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문장을 읽어보면 곧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여기서는 贅述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퇴계의 논거는 또한 一家之言에 偏執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이를테면 丘氏·高氏의 설도 모두 세속에 근사한 설이면 역시 아울러 인용하고 빠뜨리지 않았다. 오직 文公家禮가 가장 상세하고 풍부해서 그것을 많이 채택했을 따름이다. 가례의 설에 관해서는 역시 時用에 부적합한 것이 간혹 있고 심지어는 또 疑難이 있어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매번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는 그 시비를 명변하고 일단의 기성 학설에 구애됨이 없이 至善乃止하는 뜻이다. 예를 들면 鄭子中間答에서는 「滉은 일찍이 伊川이 뜻한 날은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인용한 설을 칭찬했었는데 바로 알려주신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朱선생은 伊川의 설이 옳지 않다고 한데 대해서 나로서는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書鈔 권7 전집 p.149)라고 말했고 또 그의 禹景善問答에서는 朱子是 几筵은 마땅히 喪을 끝마친 후에 철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가 행한 바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런 고로 「주자는 寒泉往來의 예에 있어서는 도리어 그러했으니 滉은 또한 이에 대하여 매번 의문을 가져서 그 說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書鈔 권9 전집 p.177)라고 말했으며, 또 그의 權章仲에게 답한 곳에 雙墓의 좌우위치에 대하여 논하고 「주자 스스로 亡妻를 매장할 때는 동쪽 一坎을 비워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의문이며 아마도 기록한 사람의 착오일 것이다.」(書鈔 권10 전집 p.202)라고 말했는데 이로 미루어 퇴계는 文公을 服膺하여 가례를 많이 채택해서 禮事를 판단했지만 그러나 역시 믿을 만한 것은 믿고 의심할 만한 것은 의심하여 한결

같이 시비를 합리적으로 귀결시켰음을 알 수가 있다.

(四) 널리 예를 잘 아는 자에게 묻다

禮儀三百에 威儀三千으로 古禮는 어수선하고 자질구레하기가 이와 같은데, 후대의 人事는 점점 번성해져 빈번히 제도가 흥하고 연혁은 더욱 많아졌으니 經緯萬彙의 禮事는 실로 한 사람이 능히 다 알 수 있는 바도 아니며 또한 한 사람이 판단하면 곧 그것이 天下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까닭에 무릇 중대한 일로써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퇴계는 언제나 臆斷을 내리지 않고 빈번히 禮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集思廣益하여 이로써 裁決하는 자료로 삼았다.

그가 安東府官에게 답한 곳에서 國恤臣服에 대해서 논급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이는 모두 망녕된 생각이며 이처럼 깊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니 반드시 널리 禮를 잘 아는 사람과 도모해서 처리하는 것이 백번 지당한 줄로 압니다. (書鈔 권3 전집 p.72)라고 했고, 또 그의 禹景善問答에서 服中에 죽은 사람은 그 斂襲에 사용하는 吉凶之服은 마땅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논하여 「이 또한 논의하여 정할 바로서 아직 고찰해 본 일이 없어서 감히 문득 말할 수가 없으니 공께서 반드시 널리 禮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書鈔 권8 전집 p.178)라고 말하였으며, 그의 臨終時의 遺戒에도 그의 형의 아들 穉에게 당부하여 「한 사람을 놓고 보고 듣는 사람은 사방에 둘러 서 있으니 네가 喪禮를 행할 때는 다른 例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물어보도록 하라. 家門鄉里에는 다행히도 禮를 잘 아는 유식한 분이 많으니 널리 묻고 널리 의논해서 행하되, 금일에 합당하면서도 古禮에 멀리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체로 좋은 것이다.(언행록 권5, 考終記 p.25)라고 말했다. 그는 處事に 근신하여 경솔히 臆斷하지 않으니 오로지 문득 스스로만 옳다고 사람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五) 세속의 便宜함을 따르다

퇴계가 예를 논함에 있어서는 주로 세속의 편의함에 따라서 행한 것이 많으므로 대개 時用에 적합하게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삼았다. 옛날의 禮文에는 보이지 않지만 今俗으로 이미 널리通行되고 있으며 또한 義理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세속에 따르는 것이 참으로 불가할 것이 없다. 그리고 禮文에는 비록 고찰되지만 그러나 今世의 國俗은 이미 많이 변천되어 古制로 돌이키기가 불편한 것도 역시 세속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일의 세속이 鄙陋해서 실로 古制를 준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天下人을 강요하여 一人之善을 따르게 한다면 이미 뒤틀리게通行되고 있는 습속을 교정하여 古制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다만 실행하기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情理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禮事를 논단할 때는 번번이 사람들에게 세속의 편의한 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주자가 일찍이 昭穆之禮를 오랫동안 廢한 것을 탄식하였는데, 가례를 지어서 어떻게 도리어 時俗에 따랐는지를 물은 金誠一에게 답하여 말하기를 「禮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이루어 놓았다한들 空文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언행록 권4 p.16)라고 했는데 이 말은 비록 주희를 이끌어 대답한 것이지만 그러나 실은 역시 퇴계가 自叙한 것이다. 그의 鄭子中間答에 挽章은 마땅히 壙中에 넣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해서 「그런 禮는 비록 근거가 없지만 세속을 따르더라도 아마 해는 없을 것입니다.」(書鈔 권7, 전집 p.148)라고 말했고, 또 그의 李剛而問答에서 祭時에 자제들이 侍立해 있어야 하는가 없어야 하는가의 일을 논하여 「祭時에 당연히 시립해 있어야 함은 禮文에 의거해 보더라도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國俗으로 생시에는 시립해 있는 예가 없으니 祭時라고 해서 모조리 古禮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墓祭나 忌祭 같은 모든 세속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書鈔 권6 전집 p.118)라고 말하였다. 이런 類의 말은 대단히 많다. 이를테면 「先祖가 행하던

바대로 따른다», 「세속의 成例에 따른다», 「고금의 마땅한 것으로써 참고를 한다», 「편의한 대로 행함이 좋다», 「그 온당하고 편리한 것을 취할 따름이다», 라고 한 말들이 모두 그것이다.

(六) 義와 理에 적합하게 하다

禮라고 하는 것은 인정에 바탕을 두고 만든 제도이다. 인정이 같은 바는 곧 의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禮制의 통행은 반드시 인정에 의해야 하고 의리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禮文에도 보이지 않고 지난날의 禮事에도 徵驗이 없지만 인정에 따른 필요한 것이라면 의로써 제도를 일으켜 決裁하여 행하게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古禮가 금일의 예제와 다름이 있는 것이나, 時王의 所制가 습속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제는 비록 준수하여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금일에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또한 행해도 무방한 것이라면 다만 情理에 의준하고 義에 求合시키면 될 뿐이다. 퇴계가 禮事를 논할 때는 매번 여기에 뜻을 쏟았다.

그가 金亨彦의 물음에 답한 곳에서 告遷之禮는 주희가례와 후에 학자들에게 준 서신 중에서 말한 것이 서로 다름이 있음을 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古人이 말한 바의 禮로, 비록 先王에게는 없었던 것이지만, 실로 義로써 일어난 것입니다.」(書鈔 권3 전집 p.61)라고 했고, 또 李仲久問答에서는 어머니의 喪中에 죽으면 그 아들이 喪을 대신하는 일의 의문을 논하여 말하기를 「前籍을 살펴보면 적용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事理로써 말한다면 ……이는 아마도 바뀌는 이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書鈔 권2 전집 p.38)라고 했으며, 또 그가 宋寡尤에게 답한 곳에서 3대, 4대를 제사하는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사대부가 3대를 제사하는 것은 곧 時王의 제도이니 실로 준수해야 되는 것이며, 4대를 제사하는 것도 大賢의 義起之禮이니 행해서 안 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세의 孝敬好禮하는 집에서 왕왕 삼가 이를 행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금하지 않는 바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書鈔 권3 전집

p.59)라고 했다. 義로써 禮를 일으킨다느니, 혹은 또 사리로써 예를 말한다느니, 심지어는 제도를 정하여 3대를 제사한다고 했으나 孝敬하여 4대를 제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 것 등은 모두 인정에 依順하고 의리에 부합하게 한 것으로 이것이 곧 禮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IV. 禮事를 논한 태도

퇴계가 禮事를 의논함에 있어서 지닌 태도는 「謹愼」 두 글자로 축히 포괄할 수 있다. 여기서 그가 여하히 근신했는가를 밝혀본다면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一) 謹愼했다

퇴계가 다른 사람의 물음에 답한 가운데서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는 비록 어찌다가 보이기는 하지만, 直席에서 판단을 내린 것은 書鈔에 두 곳과 언행록의 雜記條項 아래의 한 곳으로 불과 세 곳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심사숙고한 후에 처리했고,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곧 극히 근신하고 재삼 부탁하여 경솔히 행함으로써 후일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禮는 恭敬을 주로 하고 공경은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반드시 마음에 먼저 이 誠敬의 뜻이 있는 연후에 禮事를 행함이 표현되어야 이것이 곧 禮의 진의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먼저 일이 옳은 것인가를 따져보고 또 자신의 역량을 헤아려 행하여야 하며, 억지로 한다 해서 이룰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리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또한 남을 가르침에 이르러서는 특히 자기의 견해만으로 남에게 반드시 행하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고로 퇴계는 매사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의문되는 바가 있어 퇴계의 한마디를 기다려 결정해야만 할 일이 있게 되면 항상 두려워하고 삼가

며 감히 경솔하게 단언을 내리지 않았으니 이는 오직 이 까닭이 있다. 기명언과의 문답 중에 말하길 「고로 滉은 항시 이러한 일들은 자신이 먼저 일이 옳은 것이가를 따져보고, 또 자신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지를 헤아려서 행하여야 하고, 남을 가르쳐 기꺼이 따른다면 이 역시 불가함이 없지만 만일 사람을 거느림에 필히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王公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평범한 선비가 감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書鈔 권4 전집 p.85). 또 金而精과의 問答 중에 말하길, 「이 일은 매우 중대하여 마음대로 경솔히 말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으며(書鈔 권8 전집 p.162), 그 金士純에 답해 말하길, 「禮의 융통성에 대한 판단은 성현도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거늘 하물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함부로 거론하겠습니까?」라고 했다(書鈔 권9 전집 p.185).

이러한 言辭는 대체로 많이 보인다. 金而精은 일찍이 「의문」 一冊을 지었는데, 家禮 중 喪·祭 두 부분을 보면, 주자의 儀禮를 本으로 하고 諸儒의 설을 참고로 했다. 時制에 준하여 俗失을 밝히고 자기의 뜻에 따라 상세히 교정과 비평·분석을 가하여 퇴계에 보내 이를 심사하여 후세에 전할 예서로 해줄 것을 요망했다. 퇴계의 답서에는 저술을 경솔히 해서는 안된다고 극언하고 「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어찌 한 두 사람이 감히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말했다. 옛날 司士賁이 침상에서 襲斂을 하고자 청하여 子游가 「좋다.」라고 대답한 것을 縣子が 듣고 말하길, 「지나치도다! 叔氏의 말투를 들으니 마치 모든 예의는 모두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구나.」라고 했다. 퇴계가 사람들에게 보낸 글 중에는 「지나치다」는 戒言으로써 자책한 곳이 많이 보인다. 비록 부득이하여 예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을 행하게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깊이 삼가기를 이같이 했으니 그의 근신하는 태도를 가히 알 수 있겠다.

(二) 熟辨했다

사람이 禮를 물었을 때 이에 답하려면 반드시 그 일을 숙지한 후에

비로소 가한 것이며, 이는 완전히 평소에 쌓은 수양에 의한 것이다. 퇴계는 매사에 겸손하여 禮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가 인용한 말을 살펴보면 예학의 중요전적이 아닌 것이 없고, 근세 제유들의 의논에 대해서도 通覽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득실을 살펴 취사에 참작하고 있다. 이 어찌 정말 예를 알지 못한다고 하겠는가? 예를 아는데 그칠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때때로 연구하여 사리에 정통한 연후에 비로소 행함에 막힘이 없게 되었다. 고로 그는 丁景錫에게 답한 곳에서 말하길, 「이는 奧僻하여 알기 어려운 禮가 아님에도 사람들은 살펴보지도 않고 서로 논쟁만 하니 나같은 사람이 들어도 의아스럽고 가소롭습니다. 평소 예절에 관한 규범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고 禮事에 臨해서 막힘이 이와 같으니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書鈔 권9 전집 p.180)라고 했다.

그러나 자기가 아는 바라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도 능히 아는 것은 아니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라 해서 혹 다른 사람도 반드시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詳說審辨을 기다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옳다는 까닭을 인식시켜야만 참고로 취할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로 퇴계는 항시 예의 시비를 가리기 어려울 때, 혹은 옳은 듯하면서도 실은 옳지 못한 것은 모두 가능하다고 가정도 해보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기도 하여 주도면밀하게 생각하고 분석을 반복하여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그 禮가 의심할 것 없이 확실하고 거리낌이 없다고 판단한 연후에 비로소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오히려 감히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반드시 좋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배우지 못해 禮에 우매하다느니 이치에 맞지 않는 혼자만의 억측이라느니 하는 등의 말로써 스스로를 낮추었으며, 다른 사람이 재차 검토한 후 裁可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았다. 이는 곧 이치에 정통하고 禮事에 능숙했는데, 여기에 겸해서 상세한 분석과 판단까지 했으면서도 그래도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있으니, 퇴계가 예를 논할 때는 반드시 확실한 판단을 요건으로 했었던 태도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三) 闕疑했다

퇴계는 사람들의 물음에 闕하고 답하지 않은 것이 있다. 대저 모두 예에는 변통이 있고 일에는 편의한 것이 있음에 따라 변통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사이에서 상호 득실이 보이고, 그 경중의 표준을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마침내 置之不論하였다. 혹은 禮數에 차가 있고 장려와 배척의 표준이 일정하지 않으며, 말하는 사람도 제각기 근거한 바가 있어 역시 모두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깨뜨려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가 비록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이미 족히 의심되는 바를 闕하고 위태로움에 신중했던 태도를 증명하기에 족하다. 이로써 그가 판단한 것이 비록 결함이 전연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그러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의 金而精 문답에서 조석으로 上食을 둘 때 茶燭이 있어야 하는지의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上食을 두는 이상, 茶燭이 없을 수 없습니다. 家禮와 丘氏의 예에는 모두 이것이 없는데 혹시 다른 뜻이 있는지도 모르니, 감히 臆說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다.(書鈔 권8 전집 p.161) 이는 그 다른 뜻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또 金敬夫·肅夫에게 답한 곳에 오늘날 사람들이 服을 마치고 喪服을 태우는 것을 논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마땅히 이것을 태워야 한다면 家禮에는 어째서 말하지 않았는가? 이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라고 했다(書鈔 권3 전집 p.73) 이는 의심하여 감히 결단을 못내린 것이다. 또 李平叔과의 문답 중, 전염병에 걸려 喪을 당한 경우, 마땅히 피해야 하는가 피하지 않아야 하는가의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이는 인사의 큰 변이 극도에 달한 것으로, 내가 아직 재능있고 권세있는 지위에 도달하지 못하여 아마도 하나의 법도를 정해 세상을 훈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滯이 아직 판단하지 못하는 바의 곳입니다.」라고 했다(書鈔 권10 전집 p.26). 이는 禮事가 중대하여 차라리 闕할지언정 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李國弼이 禰祭의 禮事를 행하려고 물었을 때도 대담해 말하기를, 「이 제사는 나도 아직 행하여 본 일이 없어 감히

대답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언행록 권4 p.19). 자신이 행하여 보지 못한 바는 감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四) 改正했다

간혹 전일에 깊이 생각했어도 잘 알지 못했던 바를 후일에 알게 되었거나, 혹은 先時에 단정을 내렸던 것이라도 계속 안심이 되지 않는거나, 혹은 전후 二說이 다르거나 할 때는 당연히 후설을 정설로 삼았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옛날 현인들도 또한 면하지 못했던 바이다. 퇴계가 항시 개정한 후설에서 지나치게 자책하고 무안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대개 그가 평소 언행에 근신하여 臆說을 삼갔고, 어쩌다가 일찍이 보지 못하여 잘못을 범하거나 혹은 당초에 피했던 바가 선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면 남을 그르치지나 않았나 심히 두려워하고 한없이 追恨했기 때문이었다. 또 처음에 이치로 보아서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가도 현인의 말을 들어 돌연 깨닫게 되면 마침내 능히 前說을 고치고 남의 권고에 잘 따랐으니 역시 검허한 군자의 풍도를 살피기에 족하다.

그는 李仲久와의 문답 중, 奇明彦의 書에 繼體之服을 논한 것에 대해 언급해 말하기를, 「내용 중 한 조목에 繼體之服을 논함으로써 내 設의 잘못을 타파했는데 인용이 周到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나로 하여금 탄복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歸家할 때 다른 사람의 文獻通考, 通典 등 書籍을 빌려 와서 병중에서 대략 훑어보고 역대의 繼體之服에 대한 설이 있었음을 알고 비록 前說의 謬妄함에 대해 놀라고 또 깨닫기는 했지만 그러나 明彦처럼 辯博該暢할 수는 없었습니다. 滉은 늙고 혼미하여 방금 한 일과 방금 한 말을 문득 이처럼 착오를 범하니 마치 고인이 말하는 바의 정신착란증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明彦의 書를 받고부터 부끄러워 땀이 등을 적시는데 三日토록 멈추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書鈔 권2 전집 p.39). 또 自省錄 中 金伯榮 등에 대한 답서(전집 p.324)에서 제사를 받들 때 左側을 중시하는 일을 논하여 前者에는 家禮圖에 의거하여 대개 자기로부터 神主를 향해 좌우로 나눈다고 생각했는데 그

後慕齋의 설에 左라 함은 神主의 좌측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한 말을 듣고 따라서 말하기를, 『慕齋公은 해박하여 그 말에는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곧 그 설을 따랐다. 이는 모두 허심탄회하게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고침에 있어서 오직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태도였다.

V. 結 論

經禮三百과 曲禮三千은 한마디로 덮어 말해서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공경은 마음 속으로부터 나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니 항상 자신의 행동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고로 鄭玄은 예에 注하여 말하길, 예라는 것은 몸(體)이요 다리(履)이니 마음에 거느려지는 것을 일컬어 體라 하고, 실천하여 행하는 것을 履라 한다고 했다. 이를 일컬어 體履兼備, 지행합일이라는 것인데 이 때 비로소 예의 전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퇴계는 일생을 性理道學에 전심하여 사람을 교화할 때는 번번이 敬이란 入道之門임을 말하고 또 莊敬涵養을 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사람들을 독려할 때마다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이를 단속하여 몸소 실천함을 일로 삼고, 길이 연구하고 체험함을 공부로 삼아야 한다고 했으니, 이는 모두가 예의 참뜻을 숙지한 사람이 말한 바이다. 그리고 그 행한 바를 보면 4대 왕조를 거치는 동안 나아가고 물러남을 한결같이 義에 따라 하여 여러 번 부름을 사양하여 나가지 않고, 때가 아니면 나아가지 않았고, 의가 아니면 합하지 않으면서 어렵게 나아갔고 쉽게 물러섰다.

평소 의관을 착용함에 동작은 신중했고 거처는 齋潔했으며 생활태도는 공경했었다. 몸은 현세의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도 뜻은 고인과 더불어 함께 했으며, 今世에 행함을 후세의 모범으로 삼았다. 몸가짐이 지극히 근엄하였으나 사람과 더불어 얽히면서도 사납지 않았으며 대범하면서도 오만하지 않았다. 齋戒에는 반드시 성의를 다했고, 제사에는 반

드시 공경을 다했으니 이 모두가 儒家行實의 뜻에 깊이 부합하는 바이다. 명절 때의 제사나 時祭에는 반드시 宗家에 친히 가서 櫝을 받들고 祭物을 올리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으며, 향교에서 공자를 제사지낼 때 교생들의 致胙와 의관을 拜受하는 절차를 예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특히 그 언행을 일치토록 하고, 體와 用을 융합하게 하며, 예를 알아 의에 달하게 하고, 몸소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보고 禮義가 一世의 倡導로 되었다.

그가 禮事를 논한 것을 검토해 보면 대략 200여 조목에 달하며, 그 논술의 성질과 논단의 정확한 근거 및 禮事를 논한 태도는 상술한 바와 같으므로 번거로운 말은 생략한다. 그러나 金而精과의 문답 중 一段의 문장은 족히 그의 예를 논하는 요지를 볼 수 있는데 참으로 후에 예를 다스리는 자들이 마땅히 깊이 반성하고 모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는 말하길, 「대저 公의 결함은 善을 흠모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흠모함이 지나침을 걱정하며,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그 배우기를 좋아함이 급함을 걱정하며, 禮를 좋아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그 禮를 좋아함이 치우침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善을 흠모함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을 眞善으로 오인하고, 배우기를 좋아함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것은 이미 배운 것으로 하고, 禮를 좋아함이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반드시 世俗을 고치는 것을 得禮로 삼은 것입니다.」라고 했다.

무릇 사람이 선을 흠모하되 지나치게 흐르지 아니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되 서두르지 아니하며 예를 좋아하되 치우치지 아니하여야 곧 능히 스스로 情理의 中을 얻은 것이다. 스스로 그 情理之中을 얻으므로 항상 평범하고 착실한 곳에 힘을 기울이니 그런 연후에 비로소 옛것을 인용하되 時制를 빠뜨림이 없었고, 세속을 따르되 의리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情理之中은 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퇴계의 論禮精神의 所在인 것이다.

(퇴계학연구원 譯)